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12. 18 선고 2019가단150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2. 4.

판결 선고 2019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6. 10. 17. 접수 제14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태현

별지